

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지원을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 [목 적]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세대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, '늘봄학교 대학연계 운영사업' 을 지원·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협약사항]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1. 『서울특별시교육청』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.

- 가. '늘봄학교 대학연계 운영사업' 대상교 수요조사 및 매칭
- 나. '늘봄학교 대학연계 운영사업' 대상교 선정 및 사업비 교부
- 다. '늘봄학교 대학연계 운영사업' 대상교 모니터링 및 지속 확대 지원
- 라. 기관 간 교육협력활동 홍보

2. 『서울교육대학교』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.

- 가. '늘봄학교 대학연계 운영사업' 대상교에 대한 5종의 프로그램·강사 지원
- 나. '늘봄학교 대학연계 운영사업' 대상교 요청사항 협의
- 다. 사업 완료 후 대상교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청구서 제출
- 라. 사업의 최종 완료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운영 결과 및 정산서 제출
- 마.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
- 바. 기관 간 교육협력활동 홍보

제3조 [성실 이행] 양 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서울교육대학교는 [붙임2]의 ‘사업기관 준수사항’ 및 [붙임3]의 ‘늘봄학교 프로그램 협약단가 및 협약내용’ 을 준수해야 한다.

제4조 [협의 조정]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 내용이 필요하거나,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.

제5조 [협의 기간 및 변경·해지]

1.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
2. 본 협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협약 내용의 변경·해지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하며, 요청 당사자는 적용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.

제6조 [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]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협약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본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.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 7조 [보관]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7. 15.



서울특별시교육청

서울특별시교육청
교육감 조희연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신호